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통한 관내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회체험활동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이우환·김묘정·김상현·김수혜·김현일·남재욱
박해정·서명일·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완주·이종화·이해련·전홍표·정순옥·진형익
최은하·한은정 의원(20명)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통한 관내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회체험활동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창원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청소
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
극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
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